

<운 영 규 정>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	2
2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	4
3.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	5
4.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	9
5.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	9
6. 제품 사후관리(A/S등)에 관한 사항	10

< 복지용구 운영규정 >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*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를 희망하는 모든 복지용구는 가능한 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* 복지용구 제공시 수급자와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제품을 제공한다.
- *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, 수리 등을 실시한다.

1) 계약기간

■ 대여제품

- ① 수급자별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중 1년 단위로 계약한다.
- ② 수급자별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계약한다.

■ 판매제품

- ①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내에 구입할수 있다.
(내구연한과 이용중인 동일 품목을 확인 후 계약한다.)

2) 계약목적

수급자의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을 계약하기 위함이다.

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■ 대여제품

- ①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 한 후, 전체 대여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후, 대여한다.

- ② 대여제품을 계약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,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린다.

■ 판매제품

- ① 구입전용품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 한 후, 구입한다.

※ 대여제품과 판매제품 사용시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
4) 신원 인수인의 권리·의무

- ① 수급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입 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.
- ② 기초 수급자인 경우 신원인수인으로 법적 보호자가 아닌 타인(요양보호사, 센터장, 이웃 등)이 수급자와 조율 한 후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입 할 수 있다.
- ③ 대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수급자가 병원 및 요양원 입소, 또는 돌아가셨을 경우 반드시 복지용구 사업소에 통보한다.

5) 계약의 해제

■ 대여제품

- ①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- ②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- ③ 병원에 입원 시 대여제품(이동욕조, 전동침대)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■ 판매제품

- ①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은 7일이내 가능하며, 단 제품을 사용하여 파손 및 손상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.

2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1) 급여종류

- ① 구입방식 :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후 구입한다.

* 구입품목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(1) 이동변기 | (6) 간이변기 |
| (2) 목욕의자 | (7) 지팡이 |
| (3) 성인용보행기 | (8) 욕창예방방석 |
| (4) 안전손잡이 | (9) 자세변환용구 |
| (5) 미끄럼방지용품 | (10) 요실금팬티 |

- ① 대여방식 :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, 전체 대여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후, 대여한다.

* 대여품목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(1) 수동휠체어 | (6) 이동욕조 |
| (2) 전동침대 | (7) 목욕리프트 |
| (3) 수동침대 | (8) 배회감지기 |
| (4) 욕창예방매트리스 | (9) 경사로 |

2) 급여제공방법

- ① 수급자 1인당 연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이며,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- ②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있으며, 단기간 사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자와 계약에 따라 실시한다.
- ③ 일반수급자 및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15% 또는 9% , 6%정하여진 금액을 받는다.

■ 대여제품

- ①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.
- ②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.
- 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.

■ 판매제품

- ① 복지용구 내구연한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
- ②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성인용보행기 2개,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미끄럼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 5개, 안전손잡이 4개, 요실금팬티 4개로 구입한도내에서 구입 가능하다.

3.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

■ 대여제품

1) 전동침대

- ① 일어서고 눕는 동작을 도와주고 자립을 지원해 준다.
- ② 리모콘으로 상·하반신 및 높이 조절 가능하다.
- ③ 낙상 및 끼임 사고위험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.
- ④ 취급품목
 - 1모터 : 등판 각도를 전동으로 조절가능하다.
(HB-111, SEB-201AD)
 - 2모터 : 등판 및 다리받이 각도를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다. (SBM-210, JB600, JB600-S, SEB-501AD)
 - 3모터 : 등판 및 다리받이 각도를 전동으로 조절하며, 침대 높이를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다.

(HB-110, SEB-601AD, JB-920, PB-7000)

2) 수동휠체어

- ① 보행이 곤란할 때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보조장비이다.
- ② 가볍고 견고한 스탠다드 알루미늄 휠체어로 사용자 및 보호자가 적은 힘으로도 사용 가능하다.
- ③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이동해야한다.
- ④ 취급품목
 - 표준형 휠체어 : 접이식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약 13~20kg 정도이다.
(Mirage22D, Mirage22D-P, MIRAGE7(22D), KR-1, MIKI-W, MIKI-WAH)
 - reclining식 휠체어 :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며, 고정식 휠체어에 비하여 차축간의 거리가 길고 등받이가 연장된다.
(HAL48(22D))
 - 경량 휠체어 : 체중이 가벼운 사용자 또는 비활동적인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다. 12.5kg~14.5kg 으로 가볍고 이동성이 용이하다.(Mirage2(16D), Mirage7(16D))

3) 욕창예방매트리스

- ① 누워있는 수급자의 체중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이다.
- ②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며 PVC 재질로 펑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.
(YH-0301, YH-0302, YH-030TPU, YB-1104A)

4) 이동욕조

- ①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 형식의 이동식 욕조로 실내 어느 곳이든지 사용할수 있으며, 화장실 또는 싱크대에 연결하여 배수 가능하다.
- ② 물속으로 입수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.

(YH-2013, YH-2002)

4) 배회감지기

- ①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 실종을 미연에 방지한다. (IF-W565S)

5) 경사로

- ① 휠체어를 이용하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. (BFSP-1, R-125SL)

■ 판매제품

1) 이동변기

화장실로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설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복지용구이다.
(SAMB, APT-101)

2) 목욕의자

목욕시킬 때 수급자의 앉은 자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. (MTCA, BOFEEL 7)

3) 성인용보행기

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보행시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이다.
(슈마DH-2500, SKB-110W, HO-03, MA-RL 01, 코지워커 P02, 실버카-KS-130(네이버,베이지), ST10)

5) 미끄럼방지용품

- ① 양말 : 바닥면에 실리콘 재질이 부착되어 있어 낙상 및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한다.
(NEO-3, NEO-4, JSS-104여성용, JSS-105남성용, 덧신S 등)
② 매트 : 흡인력 있는 바닥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부드러

운 바닥으로 보행시 안락함을 제공한다.

(NT-1001, SC-2500, 세이프-플라워SH40)

6) 간이변기

① 간이 대변기 : 착석이 용이하도록 대변기의 앞부분이 납작한 구조로 되어 있다. (ABP101)

② 간이 소변기 :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마개가 부착되어 있어 내세를 막아주고 보관이 용이하며 남,녀 신체에 맞게 인체공학적 설계되어 소변 시 새지 않는다.

(ABP-106, ABP-105)

7) 지팡이

신체와 체중지지, 균형보조, 보행패턴의 교정, 보행속도와 지구성 향상을 보조하는 복지용구이다.

(ION-10F, ION-10W, WE5J5882(T401)-00(R24), LS-20F, 백건여자 지팡이-01, SKL-020)

8) 안전손잡이

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인 거실, 화장실 등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보호자의 수고를 줄이고 사용자의 자립 환경을 조성한다.

(ASH-105, ASH-106, ASH-201, CSH-1000 등)

9) 욕창예방방석

신체의 모양대로 셀 모양이 재구성되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할 수 있으며, PVC 재질로 펑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. (NSBS-bm1416, ABM-101)

10) 자세변환용구

반듯이 누운자세, 가로 누운 자세 등 여러 가지 자세로 편리하게 변환할 수 있는 복지용구이다.

(ATA-105, ATA-103, YH-LA31, YH-LA32, MPG-06 등)

4.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

1) 배송방법

■ 대여제품

- ① 소독위탁 업체에 배송을 의뢰할 경우 배송 전 수급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② 소독위탁 업체에서 배송을 한 후, 직접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카달로그를 제공하며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연락처를 제시 한다.

■ 판매제품

- ① 배송전 수급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제품 설명 및 연락처를 제공한다.
- ② 복지용구 전용 배송 차량으로 배송코스 순서에 따라 납품을 하도록 한다.

2) 재고관리

- ① 복지용구의 과잉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밀한 관리를 한다.
- ② 복지용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고를 유지한다.
- ③ 재고품을 수시로 확인하여 어느 때 출하해도 품질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.

5.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

1) 제품 소독을 위탁하여 소독의뢰 한다.

2) 제품 소독 방법

- ① 세정품 반입
- ② 세정품 분해

- ③ 1차 약품분무살균(ULV 분무살균기)
 약품분무 10분간 실시후, 30분 살균
 사용약품 : 메디록스(mdeilox-차아염소산)-식약청허가약품
- ④ 세정, 소독
 침대 - 알코올 소독
 매트리스 외피 - 염소제에 침적(10분)
 휠체어 - 물세척 및 알코올 소독
 시트 - 염소제에 침적(10분)
 욕창매트 - 염소제에 침적(10분)
 이동욕조 - 염소제에 침적(10분)
- ⑤ 2차 약품분무살균(ULV 분무살균기)
 약품분무 5분간 실시 후, 30분 살균
 사용약품 : 메디록스(medilox-차아염소산)
- ⑥ 건조(열풍기)
 200도의 고온으로 30분간 건조실시
- ⑦ 포장 및 보관
 비닐 랩으로 완전포장후, 개별보관함에 보관

6. 제품 사후관리(A/S 등)에 관한 사항

- 1) 수급자로부터 고장 및 불편등이 발생 한 경우 고장의 내용, 주소를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수리 또는 회수하여 수리한다.
- 2) 복지용구의 판매 대여를 한 후 발생하는 고장 및 회수의 경우, 1년 이내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하며, 1년이 경과 시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